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광업소 선산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신좌상”이 발생한 경우

(91-362호 91. 9. 26. 취소)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배 ○ ○

주소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원 처 분 청 :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광업소

주 문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1. 5. 20.자 “배○○”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 적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5. 20.자 청

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10. 20.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요추부 염좌, 2)신좌상”으로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요양가료후 1991. 3. 20.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 장해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 9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허리와 가슴, 다리의 통증이 심하고 혈뇨가 있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이것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7. 11. 배○○)
2. 답변서(1991. 7. 18. 원처분청)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5. 10. 배○○)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5. 20. 원처분청)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6. 24.)
6. 진단서 사본(1991. 3. 8. 원주기독병원)
7. 소견서 사본(1991. 5. .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8. 소견서(1991. 9. 19. 원주기독병원)
9. 진료기록부 사본(원주기독병원)
10.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10. 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신좌상”으로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3. 20. 치료 종결되었는 바 원주기독병원 담당 주치의의 최초 장해진단 소견서상 “1)신경외과 : 지속적인 경도의 요통을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상태임 2)비뇨기과 : 신좌상후 병발한 지속적인 혈뇨가 있음” 및 1991. 9. 19.자 추가소견서상 “신좌상후 지속적으로 현미경적혈뇨 소견이 관찰되었는 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수는 없으나 좌상후 병발한 신혈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등의 소견과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흉요, 배부염좌 및 신좌상에 대한 보존요법후 흉요추부에 국부 동통과 지속적 혈뇨가 잔존한 자임”등으로 보아 요통 및 지속적인 혈뇨 소견인 바 요통의 경우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되어 등급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혈뇨”的 경우 신좌상에 병발한 신혈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신장기능에 장해가 있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11급 9호 “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를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광업소 후산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요도부분파열, 2)복부좌상, 3)회음부좌상, 4)요도손상, 5)음경해면체섬유증”이 발생한 경우

(91-469호 91. 9. 26.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정 ○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원 처 분 청 :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소속 : ○○광업소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6. 24.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후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5. 14.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요도부분파열, 2)복부좌상, 3)회음부좌상, 4)요도손상, 5)음경해면체섬유증”으로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6. 11. 치료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해를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9급 12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육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더 큰 상태이므로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8. 26. 정○○)
2. 원처분청 의견서(1991. 8. 29.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6. . 정○○)
4. 장해등급 사정서 사본(1991. 6. 24.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8. 10.)
6.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후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5. 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도부분파열, 2)복부좌상, 3)회음부좌상, 4)요도손상, 5)음경해면체섬유증”으로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6. 11. 치료종결되었는 바 원주기독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음경 손상에 의한 음경보철설치술을 시행하였음. 음경해면체손상이 심하여 음경보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현재 음경발기부전 상태이며 이는 현저한 육체적 및 정신적 장해상태임”이며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손견은 “음경손상에 의한 발기부전 수술후 상태로서 음경보철설치술 수술결과 불량하며 발기부전 상태가 잔존할 것으로 사료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음경해면체의 명백한 손상으로 인하여 발기부전상태가 잔존한 것으로서 이는 “생식능력의 현저한 제한”의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9급 12호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될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위등급에 해당할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9급 12호 적용 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 할 이유가 없다. ♣



근면한 자에게는 모든것이 쉽고 나태한 자에게는 모든것이 어렵기만 하다.